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 도모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36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09036)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품지 증진 연구에 대한 지원 근거 및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안 제23조제6호 및 제23조의2 신설)	2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0903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8.
3. 회 부 일 : 2025.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취약지역은 택배 품목에 따라 특수배송비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등 여전히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연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운용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호 및 제2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품지 증진 연구에 대한 지원 근거 및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안 제23조제6호 및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u><신설></u>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을 위한 연구</u>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23조의2(물류취약지역 협의체의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사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지난 2024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주요 택배사들이 도서·산간 등 일부 지역에 평균 4,463원의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3일 이상 배송이 지연되는 지역도 시군구 기준 43개, 읍면동 기준 130개에 달하는 등 물류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남.

【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에 따른 물류취약지역 지정기준 】

☐ 추가요금 부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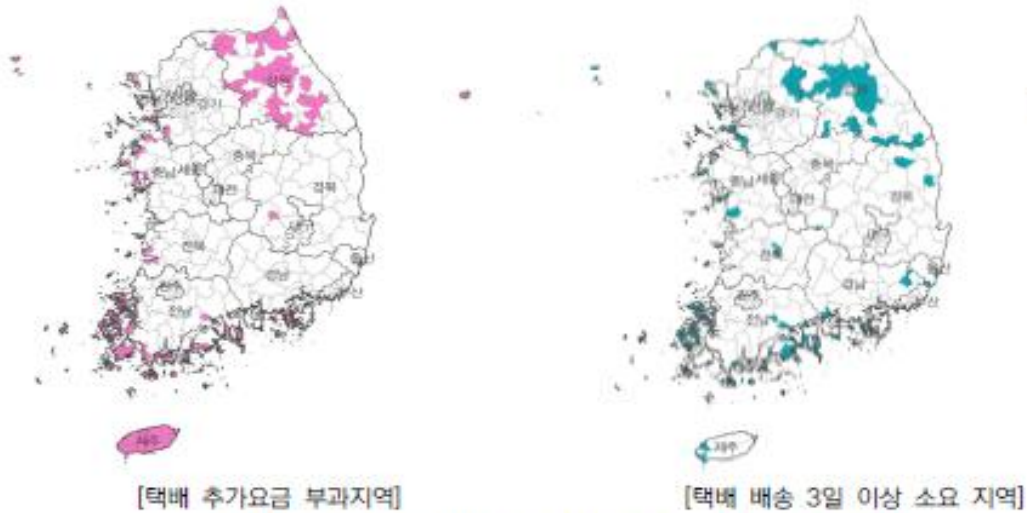
B2C, C2C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추가요금 부과 지역을 조사한 결과, 시군구 기준 44개, 읍면동 기준 180개 지역에 평균 4,463원의 추가요금 부과 중

* 추가요금은 시군구 기준 부과지역 수와 금액의 산술평균 값

☐ 배송시간(택배서비스 3일 이상 소요지역)

택배서비스 표준약관 제14조(운송물의 인도일)에서 도서·산간지역의 일반적인 인도예정일을 수탁일로부터 3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지역은 택배서비스 3일 이상 소요지역을 기준으로 설정함

-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택배 배송시간 3일 이상 소요지역을 조사한 결과, 시군구 기준 43개, 읍면동 기준 130개 지역이 해당됨



〈그림 2-3〉 택배 추가요금 부과 및 배송 3일 이상 소요 지역

이에 개정안은 ① 물류취약지역 대상 서비스 개선 연구 지원, ②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③ 사업구역 별 전담 사업자 지정과 비용지원을 통한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제고를 도모하여 국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먼저, ①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법¹⁾ 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지원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 설치·개선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범도시·단지의 조성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규정이 있으나, 물류취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연구 지원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 ②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 「물류정책기본법」²⁾에 따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생활물류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정부위원과 학계, 공공기관, 물류단체, 생활물류업계 등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른 협의체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을 생활물류전문위원회가 수행할 수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전문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전문위원회)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사·연구·검토한다.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다른 법령에서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사항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조사·연구·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제4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의 위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나.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우정사업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³⁾은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복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③ 사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이는 대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물량 이상이 확보되어야 영업점이나 택배기사가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에 배송 지연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에 따른 택배배송 지연 원인 】

2. 택배배송 3일 이상 소요지역 및 주요원인

- 택배배송 3일 이상 소요는 주로 교통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서 발생하며, 물량, 날씨, 배송영업점 및 택배기사의 결정에 따라 매일 상황이 바뀜
 - 도서지역은 주로 선박 운행 스케줄 문제에 기인
 - 일부 연륙도서, 산골지역의 경우는 적은 물량에도 불구하고 진출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영업점이나 택배기사가 자체적으로 수익성 확보를 위해 격일 배송이나 지역순번제 등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

다만, 이는 자칫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간 자율적 경쟁을 위축시킬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 있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지난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⁴⁾으로 물류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전속이 아닌 운송계약이 허용되어 택배기사가 다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물류취약지역에 대한 물량 확보가 용이해졌으므로 그 효과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추가 배송비 부과, 배송 지연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물류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요금 수준 파악을 포함한 서비스 품질

4) 지난 4월 2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24호, 2024. 12. 18.,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87호, 2025. 4. 29., 일부개정]
제6조(사업 허가신청) ①·② (생략)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이하 “집화등”이라 한다)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첨부서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허가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전속 운송계약[「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속이 아닌 운송계약을 포함한다]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이하 “집화등”이라 한다)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첨부서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필요성에 동의함.

개정안의 물류취약지역 협의체는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자문위원회의 성격이나, 현재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내 전문위원회로 생활물류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바, 별도의 협의체를 신설하지 않고 동 위원회를 통해 물류취약지역의 서비스 증진 등을 논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현재 물류취약지역에서 택배기사가 여러 택배사와 계약을 맺고 공동배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 중에 있고, 택배사(영업점)는 이를 통해 필요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택배사 간 공동배송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따라서 민간사업자들의 경영상 자유 및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전담사업자 지정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물류취약지역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배 사업자의 자발적인 사업 모델 변화 등의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입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행정안전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유사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체계로 연계하여 운영토록 규정(「행정기관위원회법」)하고 있고, 국정과제로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물류취약지역 협의체의 협의사항은 관련 위원회 등을 활용한다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물류취약지역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기획재정부

안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사업자에 대한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는 소비자 소비편의를 위해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받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어 삭제가 필요함.

4) 한국통합물류협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시장은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활성화가 바람직함. 사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제 활동 및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높고, 요금 수준에 대한 개입은 시장 질서의 교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5)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지정으로 관할 구역에 대한 재산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택배사별 영업점 간 협의를 통해 전담 배송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0